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0
----------	------

2021년 9월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박상구 의원(찬성자 32명)
-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구 의원)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안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안 제5

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
-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행안부 예규 제135호, ‘21.4.1. 시행)되면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 중 신기술 선정기능 등 신기술 선정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행안부 예규로의 일원화를 기하는 한편,
- 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대상의 확대 및 인용 범명의 불일치 해소 등 조례 운용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	----- ----- -----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 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생략)

5. ~ 7.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생략)

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 라. (생략)

3.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

제5조(기능) ①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 다.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 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추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추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생략)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자료추적 및 활용)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2호-----  
-----
3. (현행과 같음)

○ 안 제4조의 경우, 위원회 운영 근거로 인용한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이 2014.12.10일 폐지되고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15. 6. 30.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5조의 경우는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제5조제2항제2호나 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을 삭제하고 있는데,
- 이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던 전력신기술 인증제도<sup>1)</sup>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sup>2)</sup>와 유사하여 2016.1.6.일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현행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현행 제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 기능 중 제3호의 신기술 선정 기능, 제6조제2항의 신기술 선정심의 의뢰 방법, 그리고 제10조제2항의 신기술 미반영 사유의 설계보고서 기록 의무 규정에 대해 본 개정안은 이들 모든 항을 삭제하고 있음.
- 이들 항은 모두가 신기술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0. 12.30일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21.4.1. 시행)되면서 제4장의 제한입찰 운영요령〈별표2〉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즉, 현행 조례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신기술 선정 및 자문 기능은 서울시 발주부서가 운용 중인 ‘자체공

1) 전력신기술 인증제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보호해주는 제도 (1997년 최초 도입 → 2016년 폐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법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신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나 또는 3개의 후보군 중 1개의 신기술을 최종 선정하는 기능에 해당하는데,

- 행안부 예규의 신설로 인해 그동안 서울시가 신기술 선정에 활용하였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기술심사담당관)에 따른 '자체공법선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그리고 본 조례에 의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신기술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다했다 할 것이며 결국, 행안부 예규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신기술 선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안부 예규의 강화된 선정 절차에 따라 신기술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본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표]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선정위원회 현황

구 분	서울시		행안부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성 격	비 법정	법정	법정
근 거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조례('19.5.16) -재무국-	행안부 예규('21.4.1) -행정안전부-
기 능	1개공법 및 후보군 선정	1개공법 선정	1개공법 선정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신기술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 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경우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규정을 본 개정안이 이를 삭제하고 있음.

- 이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건설기술심의 대부분이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신기술의 적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 신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전체적인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음.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

2. 행안부 예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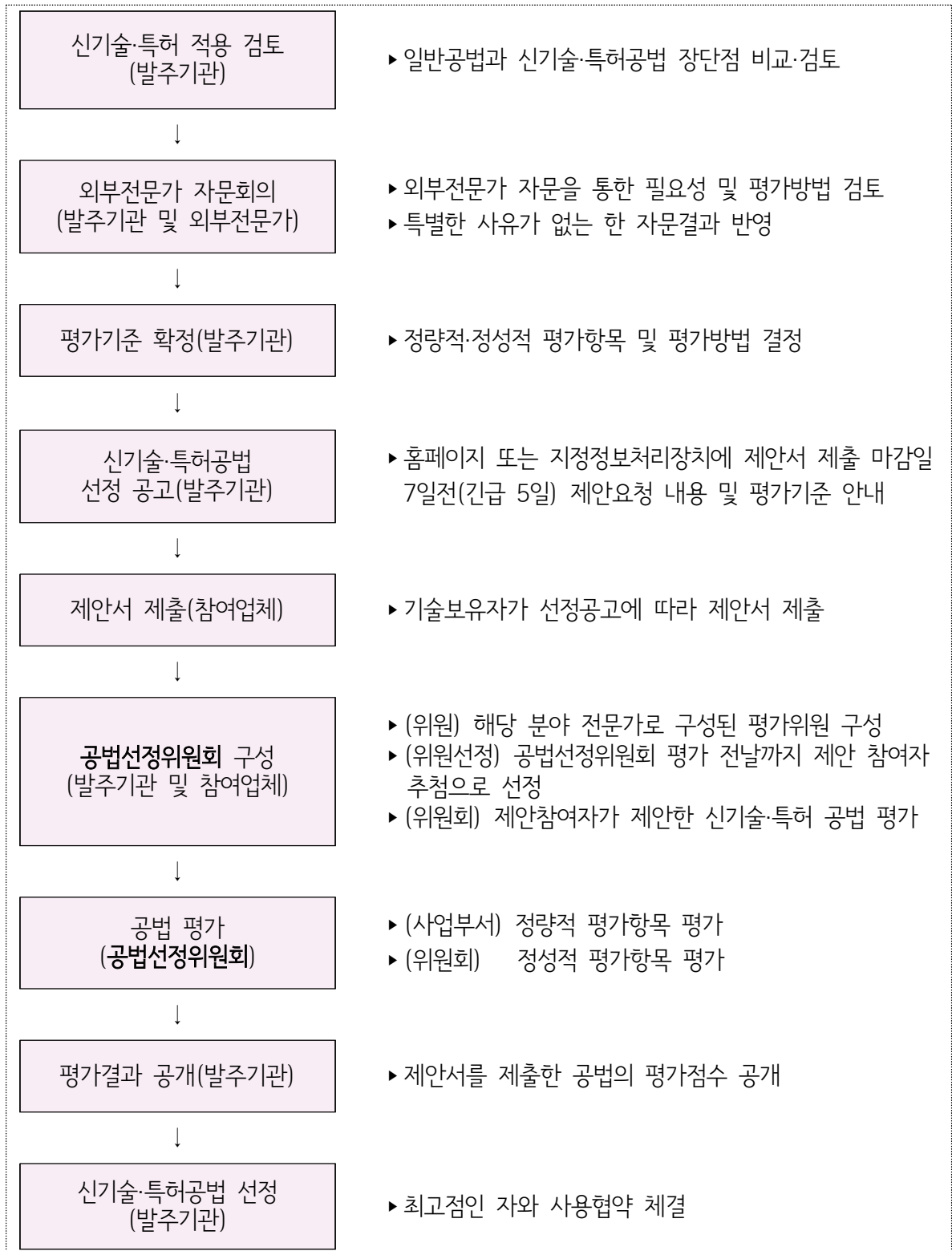
3. 행안부 예규의 평가 및 배점 기준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

구 분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 조례('19.5.16. 제정)	행안부 예규('21.4.1. 시행)	비 고
대상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li> <li>※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li> </ul>	대상확대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li> <li>•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 수</li> <li>- (10억미만) 5명이상 / (10억이상) 7명이상</li> <li>•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위원 중 호선</li> <li>• 위원수 : 외부위원만으로 구성</li> <li>- 7명 ~ 10명 이내</li> <li>• 선정방식 : 평가 전 예비명부 추천 선정</li> </ul>	내부위원 배제 추첨으로 선정
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li> <li>- 시 '건설알림이' 등록 특정기술 활용</li> <li>- 저가, 고기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 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후 정량평가로 선정</li> <li>-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 (공고 시 명시 必)</li> <li>※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li> </ul>	공고절차 추가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평가(가격) : 정성평가(기술) = 50:50</li> <li>※ 건설신기술 가점 2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평가(가격+경영):정성평가(기술) = 20:80</li> <li>※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li> <li>※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li> </ul>	기술점수 확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공개 절차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li> </ul>	결과공개



## [붙임 2] 행안부 예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붙임 3] 행안부 예규의 평가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합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특정공법선정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사항이 변경되어 개선되는지?(정재웅 위원)

답법)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자체공법선정위원회 등이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되고, 발주부서에서 구성하던 위원들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변경이 있음.(안대회 기술심사 담당관)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박상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1명)

찬 성 자 : 강대호, 권수정,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성배,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2  
명)

##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 (안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 (안 제5조제3항)

라.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u>신기술 현장 적용기준</u>」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u>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u></p> <p>4. (생략)</p> <p>5. ~ 7.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생략)</p> <p>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u>건설산업기본법</u>」 제2조제4</p>	<p>제4조(설치) ----- ----- ----- ----- 「<u>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u>」----- ----- -----.</p> <p>제5조(기능)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  
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생략)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 라. (생략)

3.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5조  
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  
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  
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  
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  
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 ~ 다. (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  
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삭제>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2호-----  
-----
3. (현행과 같음)